

신통상 수입규제 관련 수출기업 원산지 관리 실태조사



한국원산지정보원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연구진

<연구주관> 한국원산지정보원

<연구책임자>

책임연구원 권민경

<참여연구자>

연구원 김민준

연구원 박현혁

연구원 김혜량



1 개요

- 미국발 관세 중심의 보호무역 통상환경이 확대됨에 따라 WTO 체제하의 전통적 수입 규제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관세 및 원산지 규제가 증가하고 있음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2025년 무역확장법 제232조, IEEPA, 무역법 제301조 등에 기반하여 품목별, 국가별로 차등적인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보 부족, 관세 부담, 원산지 관리 부담 증가 등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이 증가하고 있음
- 본 연구는 2025년 신통상 규범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관세·원산지 관련 조치에 관한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 현황, 대응 전략 등을 파악하여 무역 환경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상기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 분기별 통상 현안을 반영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분기별 설문조사 주제는 다음과 같음
 - 1분기: 신통상 환경 속 수입 규제와 기업의 대응 전략
 - 2분기: 미국 비특혜 원산지, 원산지조사 및 관세 관련 설문
 - 하반기: 미 관세 조치에 따른 수출기업 현황 조사
- 설문 결과는 한국원산지정보원 홈페이지 인포그래픽 게시판 및 무역원산지 리포트 등을 통해 공개함



2 1분기 수출기업 설문조사

1. 설문조사 개요

- 1분기는 수출 상대국 수입 조치와 관련된 전반적인 기업 애로사항 및 대응 전략 파악을 위해 「신통상 환경 속 수입 규제와 기업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설문 문항은 수입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기준으로 구성하였으며, 비관세 조치는 UNCTAD MAST 체계를 참고하여 분류함
- 설문조사 개요는 아래와 같음
 - 조사 목적: 신통상 환경 속 수입 규제와 기업의 대응 전략 파악
 - 조사 기간: 2025년 3월 10일 ~ 2025년 3월 28일(3주간)
 - 조사 대상 및 방법
 - (대상) 2025년 수출기업 중 FTA 대상 품목을 수출한 기업
 -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비대면(e-mail 혹은 유선) 설문

2. 설문조사 결과

- 1분기 설문조사는 총 1,009개 기업이 응답하였으며, 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 응답률이 약 9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주요 애로)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시작된 1분기 상대국의 수입 관련 조치 중 가장 많은 애로를 발생시키는 조치는 [관세 부과]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원산지규정] 관련 애로가 높게 나타남

- o 특히, 미국 비특혜 원산지 기준의 모호성, 특혜 및 비특혜 원산지 기준 차이 등에 대한 기업의 정보 부족이 주요 애로로 부각됨
 - 현재 미국이 추가 관세 조치를 위해 원산지를 판단하는 경우, 자국 법령에 규정된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단하고 있으며, 원산지가 특정 국가산으로 판정되는 경우, 고율의 관세를 적용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 (대응 전략) [수출국 다변화] 전략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응 전략이 [없다]고 답변한 기업 또한 다수로 나타남

- o 응답 기업의 경우 대부분 미국의 관세 부과 정책이 확대·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관련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외 시장으로 수출선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보임
- o 대응 전략이 없음에 답변한 기업 대다수는 중소기업으로 추후 미 관세정책이 강화될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즉각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

[그림] 1분기 조사 결과 인포그래픽



주: 한국원산지정보원 홈페이지 신통상 정보-인포그래픽 게시판에서 열람 가능



3 2분기 수출기업 설문조사

1. 설문조사 개요

- 2분기는 미 관세정책 확대에 따라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미국 비특혜 원산지 기준 및 CBP 원산지 검증 등을 반영하여, 비특혜 원산지 기준에 대한 인식과 CBP 검증, 관세 영향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설문조사 개요는 아래와 같음
 - 조사 목적: 미국 비특혜 원산지, 원산지조사 및 관세 관련 인식 및 영향 파악
 - 조사 기간: 2025년 6월 9일 ~ 2025년 6월 27일(3주간)
 - 조사 대상 및 방법
 - (대상) 2025년 수출기업 중 FTA 대상 품목을 수출한 기업
 -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비대면(e-mail 혹은 유선) 설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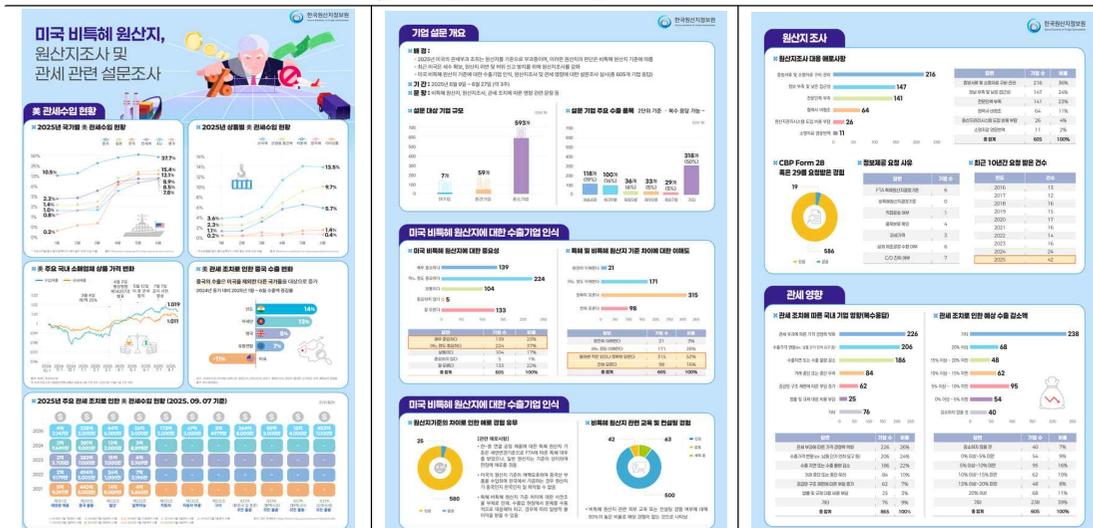
2. 설문조사 결과

- 2분기 설문조사는 총 605개 기업이 응답하였으며, 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 응답률이 약 8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응답 기업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은 HS Code 2단위 기준 제84류(기계류, 19%), 제39류(플라스틱, 16%), 제85류(전기기기, 6%)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특혜 및 비특혜 인식) 미국 수출 시 비특혜 원산지 기준에 대한 중요도 인식은 약 60%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비특혜 원산지 기준과

특히 원산지 기준의 차이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31%에 불과하며, 정보 습득을 위한 교육이나 컨설팅 참여 경험 또한 없다고 답한 기업이 83%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원산지조사) 원산지조사와 관련하여 미국이 요청하는 CBP Form 28 혹은 Form 29를 받은 경험이 있는 기업의 수는 19개社로 많지 않으나, 2016년부터 2023년 평균 요청 건수가 15건인데 비해, 최근 2년 요청 건수는 평균 33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함
- (관세 영향) 미국의 관세 부과 정책과 관련해서는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수출가격 변동], [수출 지연 또는 수출 물량 감소]를 주요 영향(피해)로 여기고 있음

[그림] 2분기 조사 결과 인포그래픽



주: 한국원산지정보원 홈페이지 신통상 정보-인포그래픽 게시판에서 열람 가능



4 하반기 수출기업 설문조사

1. 설문조사 개요

- 하반기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약 1년간 지속·확대되고 있는 미 관세정책의 영향, 기업 애로사항, 지원 정책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미 관세 조치에 따른 수출기업 현황 조사」를 주제로 통합 설문조사를 실시함
- 설문조사 개요는 아래와 같음
 - 조사 목적: 미 관세 조치에 따른 수출기업 현황 조사
 - 조사 기간: 2025년 10월 17일 ~ 2025년 11월 7일(3주간)
 - 조사 대상 및 방법
 - (대상) 2025년 직·간접적으로 미국으로 물품을 수출하고 있는 기업
 -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비대면 설문

2. 설문조사 결과

- 하반기 설문조사는 총 331개 기업이 응답하였으며, 기업 규모별로 대기업 76개, 중견기업 126개, 중소기업 129개임
 - 응답 기업의 주요 산업군은 대체로 유사하나, 전기전자 및 반도체 16%,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13%, 기계 및 산업설비 12%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우려되는 관세정책) 하반기 현재 가장 우려되는 미 관세정책은 제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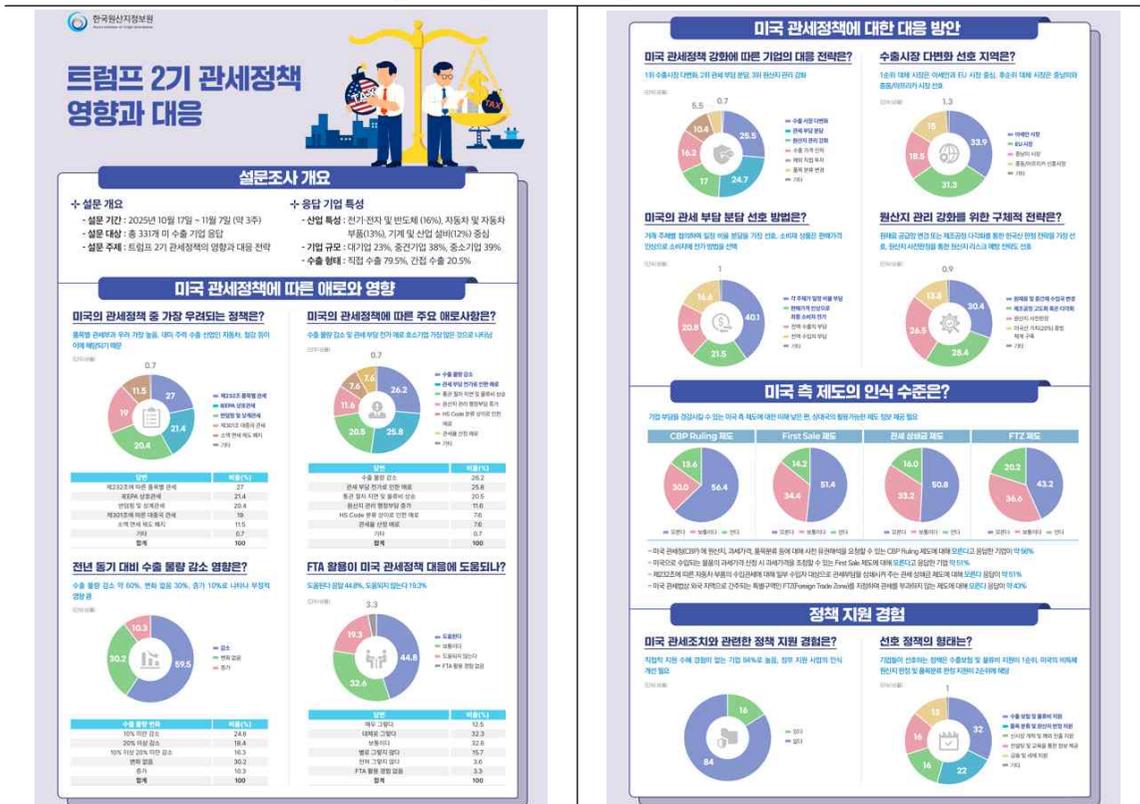
- IEEPA 관세에 대한 대법원 판결 불확실성 및 대상 품목·관세율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해당 관세조치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으로 보임
- **(주요 애로사항)** 주요 애로사항 1위는 [수출 물량 감소]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관세 부담 전가로 인한 애로], [통관 절차 지연 및 물류비 상승]으로 인한 애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수출 물량 변화)** 전년 동기 대비 수출 물량 변화를 살펴보면, 약 60%의 기업이 수출 물량이 감소했다고 답변하여 미 관세 조치가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수출 물량이 주로 감소한 산업군은 기계 및 산업설비, 전기·전자 및 반도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철강·비철금속 및 알루미늄 제품으로 제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 적용이 두드러지는 산업군임
- **(대응 전략)** 미 관세정책에 따른 기업 대응 전략은 [수출 시장 다변화], [관세 부담 분담], [원산지 관리 강화] 순으로 높은 응답을 보임
 - **(수출시장 다변화)** 시장 다변화 시 가장 선호되는 지역 1순위 및 2순위는 각각 아세안과 EU임
 - **(관세 부담 분담)** 관세 부담 분담을 위해 선호되는 방안은 수출자, 수입자 등 [각 주체가 일정 비율을 분담]하는 방안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액 수입자가 부담]하는 경우는 16.6%로 나타나 역외 수출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를 보임
 - **(원산지 관리 강화)** 원산지 관리 강화를 위해 선호되는 구체적 방안은 [원재료 및 중간재 수입국 변경]이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원산지 사전판정] 이용,

[제조공정 고도화 혹은 다각화] 순으로 높은 응답을 보임

- 미국의 관세 조치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규제 강도가 높은 만큼, 공급망 다변화를 통한 관세 회피 전략이 선호되는 것으로 사료됨

□ (정책 지원 경험) 응답 기업 중 미 관세정책 관련 정책 지원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기업은 331개社 중 53개社에 불과하여, 정부 지원 사업의 인식 개선이 필요함

[그림] 하반기 조사 결과 인포그래픽



주: 한국원산지정보원 홈페이지 신통상 정보-인포그래픽 게시판에서 열람 가능

제1장 개요 / 1

제1절 조사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조사 내용 및 방법	4

제2장 1분기 수출기업 설문조사 / 7

제1절 설문조사 개요	9
제2절 설문조사 결과	12
제3절 시사점	16
부 록 1분기 인포그래픽	17

제3장 2분기 수출기업 설문조사 / 21

제1절 설문조사 개요	23
제2절 설문조사 결과	26
제3절 시사점	31
부 록 2분기 인포그래픽	32

제4장 하반기 수출기업 설문조사 / 35

제1절 설문조사 개요	37
제2절 설문조사 결과	44
제3절 시사점	57
부 록 하반기 인포그래픽	60

제1장 개요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 제1절 조사 배경 및 목적
- 제2절 조사 내용 및 방법

제1장 개요

제1절 조사 배경 및 목적

- 미국발 관세 중심의 보호무역 통상환경이 확대됨에 따라 WTO 체제하의 전통적 수입 규제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관세 및 원산지 규제가 증가하고 있음
- 국내에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 가드와 같은 전통적 수입 규제에 대한 통계 제공 및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신통상 규범 확대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비관세 조치 및 보호무역 중심의 관세 부과 조치가 기업 수출 활동에 어떤 애로를 발생시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
 - 수입 규제란 수입국이 공정한 경쟁 또는 자국의 산업 보호를 위해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재화에 대해 부과하는 다양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지칭함
 - 이러한 관점에서 수입 규제는 전통적 수입 규제와 더불어 무역확장법 제232조 및 IEEPA 등의 법령을 근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 UNCTAD에 의해 확립된 MAST 분류체계에 따른 비관세 조치 등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으나, 특정 조치들을 규제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치들이 차별적으로 무역을 제한하거나 수출기업에 높은 순응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보호주의적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사전적 연구가 기반이 되어야 함
 - 국내에서는 정부기관 및 기타 연구기관을 통해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우회수출 등 WTO 협정에 따른 일부 무역 조치만을 규제로 인식하여 제한적 정보 제공 및 분석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표 1-1] 수입 규제 관련 국내 정보 제공 자료

기관명	제공 내용	사이트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 통계 및 가이드 제공	https://www.kita.net/importRegulation/importRegulation/importRegulationCardList.do
KOTRA	매년 상·하반기 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전망에 대한 자료 발간	https://dl.kotra.or.kr/#/search/ex
국가기술표준원	TBT 통합 정보 포털을 통해 관련 정보 제공	https://www.knowtbt.kr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	알기 쉬운 수입규제 시리즈 발간 (미국, 인도, 유럽, 터키)	https://www.mofa.go.kr

-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는 2025년 무역확장법 제232조, IEEPA, 무역법 제301조 등에 기반하여 품목별, 국가별로 차등적인 관세 및 상이한 기준을 적용·부과하고 있는바, 정보 부족, 관세 부담, 원산지 관리 부담 증가 등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이 증가하고 있음
- 본 연구는 2025년 신통상 규범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상대국 수입 관련 조치 및 미국의 관세·원산지 관련 조치에 관한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 현황, 대응 전략 등을 파악하여 무역 환경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2절 조사 내용 및 방법

- 각 분기별 통상 현안을 반영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출기업 애로사항, 대응 전략 및 정부 정책의 효율성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함

1. 분기별 주제 선정

- 2025년 급박하게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대한 기업의 애로 및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 분기별로 이슈화되고 있는 특정 주제를 선정하여 설문조사 진행

- o 1분기: 신통상 환경 속 수입 규제와 기업의 대응 전략
- o 2분기: 미국 비특혜 원산지, 원산지조사 및 관세 관련 설문
- o 하반기: 미 관세 조치에 따른 수출기업 현황 조사

2. 설문 설계 적절성 검토

- 수출기업, 관세사 및 회계사 등의 전문가 자문을 반영하여 설문 문항 설계 및 검토 진행
 - o (문항 설계) 각 주제에 대한 주요 기업 인터뷰 및 전문가 자문 내용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설문 문항 설계
 - o (검토) 설문 문항 간 중복 응답 가능성 및 설문 보기 오류 최소화를 위해 내부 회의 및 2차 자문을 통한 검토 수행

3. 조사 결과 공개

- 설문조사 결과를 인포그래픽, 기고문 및 보고서 형태로 공개
 - o (인포그래픽) 각 분기별 설문 결과를 인포그래픽화하여 한국원산지정보원 홈페이지에 게시
 - o (기고문) 한국원산지정보원 「무역원산지 리포트」를 통해 설문 분석 결과 제공
 - 1분기: 「2025 무역원산지 리포트 vol.2」 신통상 환경 속 수입 규제 현황과 기업의 대응 전략 실태 - 기업의 애로와 대응을 중심으로 -
 - 2분기: 「2025 무역원산지 리포트 vol.3」 미국 관세정책 대전환 시대, 수출기업의 원산지 관리 역량 진단
 - 하반기: 「2025 무역원산지 리포트 vol.4」 2025년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따른 한국 수출기업 영향 분석 - 기업 애로, 대응 전략, 정책 효율성을 중심으로
 - o (보고서) 2025년 수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서 형태로 제작

제2장

1분기 수출기업 설문조사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제1절 설문조사 개요

제2절 설문조사 결과

제3절 시사점

부 록 1분기 인포그래픽

제2장 1분기 수출기업 설문조사

제1절 설문조사 개요

- 1분기는 상대국 수입 조치와 관련된 전반적인 기업 애로사항 및 대응 전략 파악을 위해 「신통상 환경 속 수입 규제와 기업의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를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함
- 설문 문항 구성은 수입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기준으로 설계하였으며, 비관세 조치의 분류는 UNCTAD MAST 체계를 기반으로 설문을 실시한 ITC Business Survey를 참고함

[그림 2-1] ITC Business Survey 예시

A to O. Import related measures	
Measures imposed by the country importing the goods. From the perspective of an exporter, these are the measures applied by the destination country of your product. From the perspective of an importer, these are the measures applied by your own country on the goods that you import.	
Technical measures	A. Technical requirements
	B. Conformity assessment
Non-technical measures	C. Pre-shipment inspection and other entry formalities
	D. Trade remedies (antidumping, countervailing and safeguards)
	E. Quantity control measures (e.g. licences, quotas, prohibitions)
	F. Charges, taxes and price control measures
	G. Finance measures
	H. Anti-competitive measures
	I.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
	J. Distribution restrictions
	K. Restriction on post-sales services
	L. Subsidies
M. Government procurement restrictions	
N. Intellectual property	
O. Rules of origin and related certificate of origin	

A	Administrative burdens related to regulations	A1. Large number of different documents A2. Documentation is difficult to fill out A3. Difficulties with translation of documents from or into other languages A4. Numerous administrative windows/organizations involved, redundant documents
B	Information/transparency issues	B1. Information on selected regulation is not adequately published and disseminated B2. No due notice for changes in selected regulation and related procedures B3. Selected regulation changes frequently B4. Requirements and processes differ from information published
C	Discriminating behaviour of officials	C1. Arbitrary behaviour of officials regarding classification and valuation of the reported product C2. Arbitrary behaviour of officials with regards to the reported regulation
D	Time constraints	D1. Delay related to reported regulation D2. Deadlines set for completion of requirements are too short
E	Unusually high payment	E1. Unusually high fees and charges for reported certificate/regulation E2. Informal payment, e.g. bribes for reported certificate/regulation
F	Lack of sector-specific facilities	F1. Limited/inappropriate facilities for testing F2. Limited/inappropriate facilities for sector-specific transport and storage, e.g. cold storage, refrigerated trucks F3. Other limited/inappropriate facilities, related to reported certificate/regulation
G	Lack of recognition/accreditations	G1. Facilities lacking international accreditation/recognition G2. Other problems with international recognition, e.g. lack of recognition of national certificates
H	Other	H1. Other procedural obstacles, please specify

출처: Navigating Non-tariff Measures-Insights from a Business Survey in the EU

o 1분기 설문에 활용된 관세 및 비관세 조치에 대한 세부 기준은 아래와 같음

[표 2-1] 관세 및 비관세 조치 분류

구분	조치	설명
관세 조치	관세 부과 (무역구제조치 관련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법에 따른 일방적 관세 부과 조치 - ex) 미국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
	무역구제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덤핑관세조치 상계관세조치 세이프가드조치
비관세 조치	선적 전 검사 및 기타 통관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적 전 검사 통관상 세관의 특정 요구 기타 절차상 요구
	원산지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엄격한 원산지기준 특혜·비특혜 원산지규정 차이 원산지증명, 표시, 검증 불명확한 원산지규정 등
	동식물위생검역(SPS)	<ul style="list-style-type: none"> SPS에 따른 수입 금지/제한 라벨링, 표시 및 포장 요구 적합성 평가 기타 위생 요구 등
	무역기술장벽(TBT)	<ul style="list-style-type: none"> TBT 관련 수입 허가/라이선스 라벨링, 표시 및 포장 요구 적합성 평가 기타 제품 안정성, 품질 요구 등
	수량제한조치 (SPS, TBT 관련 조치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쿼터, 금지, 허가 TRQ 등
	가격통제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소 수입 가격 조치 수입품에 부과되는 내국세 등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 및 경쟁 관련 조치 무역 관련 투자 조치 유통제한 판매 후 서비스 제한 보조금 정부조달제한 지식재산권 등

□ 설문조사 개요는 아래와 같음

o 조사 목적: 신통상 환경 속 수입 규제와 기업의 대응 전략 파악

o 조사 기간: 2025년 3월 10일 ~ 2025년 3월 28일(3주간)

o 조사 대상 및 방법

- (대상) 2025년 수출기업 중 FTA 대상 품목을 수출한 기업

-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비대면(e-mail 혹은 유선) 설문

□ 설문 문항

Q1. 다음 수출상대국의 수입 관련 조치 중 귀사의 수출 활동에 애로를 발생시키는 조치는 무엇입니까?(1~3순위에 V 체크)

구분	조치	설명	1순위	2순위	3순위
관세 조치	관세 부과 (무역구제조치 관련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법에 따른 일반적 관세 부과 조치 - ex) 미국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 			
	무역구제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덤핑관세조치 상계관세조치 세이프가드조치 			
비관세 조치	선적 전 검사 및 기타 통관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적 전 검사 통관상 세관의 특정 요구 기타 절차상 요구 			
	원산지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엄격한 원산지기준 특혜·비특혜 원산지규정 차이 원산지증명, 표시, 검증 불명확한 원산지규정 등 			
	동식물위생검역(SPS)	<ul style="list-style-type: none"> SPS에 따른 수입 금지/제한 라벨링, 표시 및 포장 요구 적합성 평가 기타 위생 요구 등 			
	무역기술장벽(TBT)	<ul style="list-style-type: none"> TBT 관련 수입 허가/라이선스 라벨링, 표시 및 포장 요구 적합성 평가 기타 제품 안정성, 품질 요구 등 			
	수량제한조치 (SPS, TBT 관련 조치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쿼터, 금지, 허가 TRQ 등 			
	가격통제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소 수입 가격 조치 수입품에 부과되는 내국세 등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 및 경쟁 관련 조치 무역 관련 투자 조치 유통제한 판매 후 서비스 제한 보조금 정부조달제한 지식재산권 등 			

Q1-1. Q1 질문에 체크한 조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애로사항이나 관련 근거 법령 등에 대해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Q2. 상대국의 수입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귀사는 어떠한 방안을 진행 또는 고려하고 계십니까?

- ① 수출국 다변화
- ② 원재료 원산지 관리 강화(원재료 공급업체 관리 및 변경, 엄격한 증빙서류 관리 등)
- ③ 제조공정 다변화 및 품목분류 변경
- ④ R&D 투자, 비용 절감 등을 통한 제품 품질·가격 경쟁력 강화
- ⑤ 해외직접투자 확대(법인·공장 신설, 인수합병 등)
- ⑥ 없다
- ⑦ 기타 ()

제2절 설문조사 결과

- 1분기 설문조사는 총 1,009개 기업이 응답하였으며, 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 응답률이 약 9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2] 설문 응답 기업 규모

구분	기업 수
대기업	13개
중견기업	80개
중소기업	908개
기타	8개
합계	1,009개

- 국내기업들이 수출 과정에서 직면하는 수입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분석한 결과, 기타를 제외하고 [관세 부과](33.2%)가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원산지규정]이 19%, [선적 전 검사 및 기타 통관절차]가 11.8% 순으로 집계됨

[표 2-3] 규제로 작용하는 상대국 수입 관련 조치 -1순위 답변-

수입 조치	기업 수	비율 (%)
관세 부과(무역구제조치 관련 제외)	335	33.2
기타	200	19.8
원산지규정	192	19
선적 전 검사 및 기타 통관 절차	119	11.8
무역기술장벽(TBT)	59	5.8
가격통제조치	37	3.7
무역구제조치	32	3.2
수량제한조치(SPS, TBT 관련 조치 제외)	18	1.8
동식물위생검역(SPS)	17	1.7
합계	1,009	100

- 1~3순위 결과를 종합한 결과에서도 기타를 제외하고 [관세 부과]가 20.3%로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으며, [원산지규정] 19.6%, [선적 전 검사 및 기타 통관절차] 14.7% 등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확인되어 전반적으로 관세 및 원산지 관련 규제가 수출 시 많은 애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확인됨

[표 2-4] 규제로 작용하는 상대국 수입 관련 조치 -1~3순위 종합-

수입 조치	건수	비율 (%)
기타	475	21.5
관세 부과(무역구제조치 관련 제외)	448	20.3
원산지규정	432	19.6
선적 전 검사 및 기타 통관 절차	324	14.7
무역기술장벽(TBT)	187	8.5
가격통제조치	116	5.3
무역구제조치	104	4.7
동식물위생검역(SPS)	65	2.9
수량제한조치(SPS, TBT 관련 조치 제외)	57	2.6
합계	2,208	100

□ 주요 애로사항으로 [관세 부과]를 선택한 기업들의 구체적인 애로사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남

- 전반적으로 미 관세정책이 지속 확대됨에 따라 자사의 제품이 관세 부과 대상 품목에 해당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및 관세율 상승에 대한 우려가 가장 높았으며, 이미 부과 중인 대중국 관세 등에 의해 기업의 수출 활동 및 매출, 영업이익 등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도 다수 존재함

[표 2-5] 관세 부과 관련 기업 애로사항

기업	주요 애로사항
기업 A	• 환율 인상으로 인해 원가가 지속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관세 부과로 인한 부담까지 가중되어 수출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
기업 B	• 관세 부과 정책이 본격적으로 실행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기업 C	• 현재 수출 품목이 미 관세 정책 변화에 따라 관세 대상 품목에 포함될 것을 우려하고 있음
기업 D	• 미국 OEM 제품 납품 시 반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한 후, 중국에서 완제품으로 제작하여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나, 중국에 대한 관세율 인상으로 인해 중국 완제품 생산 업체에서 당사로 반제품 단가 인하를 요청하고 있어 대응에 어려움이 있음
기업 E	• IEEPA에 따른 캐나다와 멕시코 대상 고율 관세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고객사의 수요가 감소하거나 큰 변동 폭을 보이는 등 적시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주요 애로사항으로 [원산지규정]을 선택한 기업들의 구체적인 애로사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남
 - 조사 결과, 서류 형식, 원산지검증 등 FTA를 활용하던 기업들의 고질적인 애로사항들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 반면, 제232조, 제301조, IEEPA 등에 따른 미국의 관세 조치는 국가별로 차등적인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바, 관세 부과를 위해 원산지를 판단하는 경우 미측의 비특혜 원산지 기준인 실질적 변형 기준이 활용되므로 이에 대한 기업의 애로가 증가하고 있음

[표 2-6] 원산지규정 관련 기업 애로사항

기업	주요 애로사항
기업 A	• 한-미 FTA에 따른 특혜 원산지와 별개로 미국의 비특혜 원산지 규정 및 Ruling 제도에 대한 부담이 있음
기업 B	• 미국 수출 시, FTA에 따른 특혜를 받더라도 일부 부품이 중국산일 경우, 추가 관세를 부과받거나 원산지 조사를 받는 사례 발생
기업 C	• 원산지와 관련하여 원재료 산국의 생산 관련 근무 실태자료, 인사자료, 구체적인 생산 정황 등 제출하기 곤란한 서류를 요청받아 대응이 어려움
기업 D	• 수출국에 따라 띄어쓰기 등 경미한 차이에도 원산지 증명서를 다시 발행해야 하는 경우가 존재
기업 E	• 중소기업 입장에서 원산지 검증 절차가 엄격하고 불명확하여 대응하기가 어려우며, 특히, 수입국 세관의 임의적 해석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많아 불확실성이 큼

- [관세 부과]를 1순위 애로사항으로 선택한 기업의 주요 대응 전략은 [수출국 다변화]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없음], [R&D 투자, 비용 절감 등을 통한 제품·품질·가격 경쟁력 강화]가 높은 비중을 차지함
 - 미 관세정책에 따라 보호무역주의 성향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러한 규제 대응 및 준수 비용을 감당하는 것보다 기타 국가로 수출선을 다변화하는 것을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보임
 - 전체 응답 기업 1,009개社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약 90%인 것으로 판단했을 때, 미측의 관세부과 정책이 장기화될 경우, 이에 대한 중소기업에 즉각적인 피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표 2-7] 관세 부과에 따른 대응 전략

대응 전략	기업 수	비율 (%)
수출국 다변화	144	43
없다	76	22.7
R&D 투자, 비용 절감 등을 통한 제품·품질·가격 경쟁력 강화	38	11.3
원재료 원산지 관리 강화(원재료 공급업체 관리 및 변경, 엄격한 증빙서류 관리 등)	36	10.7
제조공정 다변화 및 품목분류 변경	23	6.9
해외직접투자 확대(법인, 공장신설, 인수합병 등)	12	3.6
기타	6	1.8
합계	335	100

- [원산지규정]을 1순위 애로사항으로 선택한 기업의 주요 대응 전략은 [수출국 다변화]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없음], [원재료 원산지 관리 강화]가 높은 비중을 차지함
- 미측의 원산지 증명 및 원산지 검증 절차가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미 수출 시장을 유지하려는 기업의 경우, [원재료 원산지 관리 강화] 전략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1순위 전략으로 [수출국 다변화] 전략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아 규제 준수 비용 회피 성향이 큰 것으로 보임

[표 2-8] 원산지규정에 따른 대응 전략

대응 전략	기업 수	비율 (%)
수출국 다변화	70	36.5
없다	44	22.9
원재료 원산지 관리 강화(원재료 공급업체 관리 및 변경, 엄격한 증빙서류 관리 등)	41	21.4
R&D 투자, 비용 절감 등을 통한 제품·품질·가격 경쟁력 강화	18	9.4
제조공정 다변화 및 품목분류 변경	14	7.3
해외직접투자 확대(법인, 공장신설, 인수합병 등)	5	2.6
합계	192	100

제3절 시사점

1. 조사 내용 요약

-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부과 정책으로 인해 [관세 부과] 조치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원산지규정] 관련 애로사항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 특히, 원산지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애로와 관련하여 미국 비특혜 원산지 기준의 모호성, 특혜 원산지와 비특혜 원산지 기준의 차이, 미국의 e-Ruling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부각
 - 이는 현재 미국이 무역법 제301조, 무역확장법 제232조, IEEPA 등에 따른 관세 부과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원산지를 판단하는 경우, 미국 자국 법령에 기재되어 있는 비특혜 원산지 기준인 실질적 변형 기준을 활용하는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주요 애로인 [관세 부과] 및 [원산지규정]과 관련하여 [수출국 다변화] 전략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응 전략이 [없다] 고 답변한 기업 또한 다수인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 품목 및 관세율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기업들이 미국 시장의 관세 리스크를 감당하기 보다는 타국으로 수출선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보임
 - 대응 전략이 없다고 답변한 기업의 대다수가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나, 추후 미국의 관세정책이 강화될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즉각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2. 시사점

- 2025년 미국의 관세정책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기업의 대응 전략 강화를 위한 원산지 교육 및 정부 및 유관기관의 지원책 수립이 필요하며, 특히, 비교적 대응 역량이 낮은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 수립이 시급함

부 록. 1분기 인포그래픽



관세

한국원산지정보원
Korea Research of Origin Information

최근 세계 주요국 관세 관련 조치



최근 미국 주요 관세 조치 (타임라인)

2025. 02. 04.	중국	IEEPA에 따라 팬타닐 관세 10% 부과
2025. 03. 04.	중국	펜타닐 관세 10% → 20%로 인상
2025. 03. 04.	캐나다, 멕시코	IEEPA에 따라 25% 마약-이민 관련 관세 부과 * 캐나다 에너지 제품은 10%
2025. 03. 07.	캐나다, 멕시코	USMCA 협정 적용 품목 및 자동차는 마약-이민 관련 관세 일시 면제
2025. 03. 12.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25% 관세 부과
2025. 04. 02.	전세계	IEEPA에 따라 10% 보편관세(4.5 발효) 및 국가별 상호관세(4.9 발효) 발효 * 주요국 관세율: 한국 25%, 중국 34%, EU 20%
2025. 04. 03.	자동차	제232조에 따라 25% 관세 부과
2025. 04. 09.	중국	중국 상호관세 34% → 84%로 인상 발표
2025. 04. 10.	전세계	국가별 상호관세 90일 유예(중국 제외)
2025. 04. 10.	중국	대중국 상호관세 125%로 재산정
2025. 05. 02.	중국	중국/홍콩 소액 면세 기준 폐지
2025. 05. 03.	자동차 부품	제232조에 따라 25% 관세 부과
2025. 05. 12.	중국	미 중 합의로 대중국 상호관세율 115% 인하(125% → 10%)
2025. 06. 04.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	기준 25% → 50%로 인상

중국의 반응

2025. 04. 04.	미국 수출품에 34% 관세 맞벌
2025. 04. 09.	34% → 84%로 상향
2025. 04. 11.	84% → 125%로 상향
2025. 05. 12.	미 중 합의로 대미국 관세율 10%로 완화



캐나다의 반응

2025. 03. 04.	미국 수출품(208억불)에 25% 보복관세
2025. 03. 10.	온타리오 주 정부, 미국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맞서 미국 수입 천력에 25% 추가 관세(다음 날 일시 유예)
2025. 03. 13.	미국 수출품(207억불) 25% 철강 보복 관세
2025. 03. 23.	867억 달러 규모 추가 관세 예고
2025. 04. 09.	USMCA 미적용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 발효

멕시코의 반응

미국의 대멕시코 관세 재부과 여부에 따라 시행일 및 세율 확정 예정



관세 조치에 따른 기업의 대응 전략은?



수출국 다변화	144건	43%
없음	76건	22.7%
R&D 투자, 비용 절감 등을 통한 제품-품질-가격 경쟁력 강화	38건	11.3%
원재료 원산지 관리 강화 (원재료 공급업체 관리 및 변경, 엄격한 증빙서류 관리 등)	36건	10.7%
제조공정 다변화 및 품목분류 변경	23건	6.9%
해외직접투자 확대 (법인 공장신설, 인수 합병 등)	12건	3.6%
기타	6건	1.8%
합계	335건	100%

관세 조치 관련 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은?

반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해당 반제품을 완제품화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중국 기업이 미국의 대중국 관세 조치를 근거로 반제품의 단가 인하를 요청하여 대응이 어려움

현재 수출하고 있는 품목이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것이 우려됨

미국의 관세 조치가 빠르게 변화, 확대되어 이에 대한 조사 및 대응을 하는데 인력 및 시간이 낭비되고 있음

미국 지사가 제이다에서 R&M 제품을 수입하여 용접에 사용해주고 있는데, 제이다에 대한 미국의 추가 관세로 인해 마진 및 판매가 적어서 어려움

원산지



수입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원산지규정이란?

원산지규정 관련 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은?

한-미 FTA에 따른 특별원산지외 별개로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규정 및 Ruling 제도에 대한 부담이 있음

미국 수출 시, 도매에 따른 특혜를 받더라도 일부 부품이 중국산일 경우, 추가 관세를 부과한거나 원산지의 조사를 받는 사례 발생

원산지와 관련하여 원재료 산국의 생산 관련 근무 실권(지문, 인사자료, 디에프인 생산 장황 등 제출하기 곤란한 서류를 요청) 받아 대응이 어려운 적이 있음

수출국에 따라 적어지도록 엄격한 차이에도 원산지 증명서를 다시 발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중소기업 입장에서 원산지의 검증 절차가 엄격하고 불명확하게 대응하기가 어렵으며, 특히, 수입국 세관의 임의적 해석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많아 절차실행이 큼

엄격하거나 불명확한 원산지규정

특혜, 비특혜원산지 규정 차이

상대국 비특혜원산지 규정의 모호성, 엄격성

지나친 원산지 증명 관련 서류 요구

원산지증명, 표시, 검증 관련 문제 등

원산지규정에 따른 기업의 대응 전략은?



수출국 다변화	70건	36.5%
없음	44건	22.9%
원재료 원산지 관리 강화 (원재료 공급업체 관리 및 변경, 엄격한 증빙서류 관리 등)	41건	21.4%
R&D 투자, 비용 절감 등을 통한 제품-품질-가격 경쟁력 강화	18건	9.4%
제조공정 다변화 및 품목분류 변경	14건	7.3%
해외직접투자 확대 (법인 공장신설, 인수 합병 등)	5건	2.6%
합계	192건	100%

제3장 2분기 수출기업 설문조사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제1절 설문조사 개요

제2절 설문조사 결과

제3절 시사점

부 록 2분기 인포그래픽

제3장

2분기 수출기업 설문조사

제1절 설문조사 개요

- 2분기는 관세조치 영향 및 비특혜 원산지 기준에 대한 수출기업 인식과 더불어 우회수출 방지 등을 위해 엄격한 원산지 관정을 진행하고 있는 미국의 정책 방향성을 고려하여 「미국 비특혜 원산지, 원산지조사 및 관세 관련 설문」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1분기 수출기업 설문조사 결과, 수출기업의 주 애로사항으로 미국의 관세 조치 및 원산지규정 관련 애로가 높은 순위로 집계된 바, 미국이 IEEPA에 따른 국가별 차등 관세 부과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시기적 중요성을 반영하여 주제 선정
- 설문조사 개요는 아래와 같음
 - 조사 목적: 미국 비특혜 원산지, 원산지조사 및 관세 관련 인식 및 애로 파악
 - 조사 기간: 2025년 6월 9일 ~ 2025년 6월 27일(3주간)
 - 조사 대상 및 방법
 - (대상) 2025년 수출기업 중 FTA 대상 품목을 수출한 기업
 -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비대면(e-mail 혹은 유선) 설문

□ 설문 문항

1. 미국 수출 시 미국의 비특혜 원산지 기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②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③ 보통이다
 - ④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⑤ 잘 모른다

2. 귀사는 FTA 등에 따른 특혜 원산지 기준(예: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과 비특혜 원산지 기준(예: 미국의 실질적 변형 기준)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계십니까?
 - ①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
 - ②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
 - ③ 들어본 적은 있으나 정확히는 모른다
 - ④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3. 특혜 원산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와 비특혜 원산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물품의 원산지가 달라 애로를 겪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어떤 애로사항을 겪었는지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 ② 없다

4. 비특혜 원산지 기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외부 교육 또는 컨설팅 등을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네
 - ② 아니오
 - ③ 계획 중이다

5. 원산지조사 대응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 ① 전문 인력 부족
 - ② 원산지 조사 관련 정보 부족 및 낮은 접근성
 - ③ 증빙서류 및 소명자료 구비 및 관리
 - ④ 협력사 비협조
 - ⑤ 원산지관리시스템 도입 비용 부담
 - ⑥ 소명자료 영문 번역

6. 귀사는 원산지와 관련하여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혹은 미국 수입자 등으로부터 CBP Form 28 혹은 CBP Form 29를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네 → 6-1, 6-2 질문 추가 연계
 - ② 아니오

6-1. 6번 문항에서 ‘네’ 를 선택하신 경우, 미국 CBP가 정보제공을 요청한 사유는 무엇입니까?(복수 응답 가능)

- ① FTA 특혜원산지결정기준(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등)
- ② 비특혜원산지결정기준(실질적변형기준)
- ③ 직접운송 여부
- ④ 품목분류 확인
- ⑤ 과세가격
- ⑥ 실제 제조공정 수행 여부
- ⑦ C/O 진위 여부
- ⑧ 기타()

6-2. 지난 10년간 미국 CBP로부터 원산지 조사 관련 CBP Form 28 혹은 CBP Form 29를 받은 횟수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총횟수	(회)									

7.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주요 영향(피해)은 무엇입니까? (복수 선택 가능)

- ① 수출가격 변동(ex. 납품 단가 인하 요구 등)
- ② 미국 수출 지연 또는 수출 물량 감소
- ③ 거래 중단 또는 중단 우려
- ④ 공급망 구조 재편에 따른 부담 증가
- ⑤ 법률 및 규제 대응 비용 부담
- ⑥ 관세 부과에 따른 가격 경쟁력 약화
- ⑦ 기타

8. 2025년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라 귀사의 미국 수출액은 작년 대비 얼마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①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
- ② 0% 이상 ~ 5% 미만
- ③ 5% 이상 ~ 10% 미만
- ④ 10% 이상 ~ 15% 미만
- ⑤ 15% 이상 ~ 20% 미만
- ⑥ 20% 초과
- ⑦ 해당사항 없음

9. 귀사의 주요 수출 품목의 HS 코드(6단위 기준)는 무엇입니까?(복수응답 가능)

제2절 설문조사 결과

1. 기업 특성

- 2분기 설문조사는 총 605개 기업이 응답하였으며, 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 응답률이 약 8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1] 설문 응답 기업 규모

구분	기업 수
대기업	7
중견기업	59
중소기업	539
합계	605

- 응답 기업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은 HS Code 2단위 기준으로 제84류(기계류, 19%), 제39류(플라스틱, 16%), 제85류(전기기기, 6%)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3-2] 2단위 기준 수출 품목 -복수 응답-

HS Code	개수	비율 (%)
제84류	118	19
제39류	100	16
제85류	36	6
제90류	33	5
제87류	29	5
기타	318	50
합계	634	100

2. 미국 특혜 및 비특혜 원산지 인식

- 미국 비특혜 원산지의 중요성에 대해 중요하다고 답한 기업은 60%로 높게 나타났으나, 여전히 22%의 기업은 이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고 대답함에 따라 비특혜 원산지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3-3] 미국 비특혜 원산지 중요성 인식

답변	기업 수	비율 (%)
매우 중요하다	139	23
어느 정도 중요하다	224	37
보통이다	104	17
중요하지 않다	5	1
잘 모른다	133	22
총합계	60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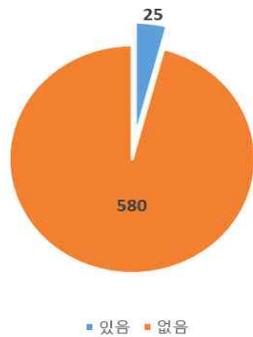
- 특혜 원산지 및 비특혜 원산지 기준의 차이 인식에 대한 질문에는 [완전히 이해한다]고 답변한 기업이 전체의 3%에 불과하였으며, [들어본 적은 있으나 정확히 모른다]는 답변이 52%, [모른다]는 답변이 16%로, 대체로 특혜와 비특혜 원산지의 차이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 관세 부과가 비특혜 원산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대다수 기업이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은 예기치 못한 관세 부과나 원산지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을 의미함

[표 3-4] 미국의 특혜 및 비특혜 원산지 차이 인식

답변	기업 수	비율 (%)
완전히 이해한다	21	3
어느 정도 이해한다	171	28
들어본 적은 있으나 정확히 모른다	315	52
전혀 모른다	98	16
총합계	605	100

- 미국 수출 시 특혜 및 비특혜 원산지 기준이 달라 애로를 겪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25개 기업이 이미 애로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애로사항은 다음과 같음

[표 3-5] 특혜 및 비특혜 원산지 기준 차이에 따른 애로



[관련 기업 애로사항]

- 한-중 연결 공정 제품에 대한 특혜 원산지 기준은 세번변경기준으로 FTA에 따른 특혜 대우를 받았으나, 일반 원산지는 기준이 상이하야 관정에 애로를 겪음
- 미국의 원산지 기준이 애매모호하여 중국산 부품을 수입하여 한국에서 가공하는 경우 원산지가 중국인지 한국인지 잘 파악할 수 없음
- 각각의 원산지 기준에 따라 원산지가 달라지는 경우에 대한 사전 조율이 없어 실제 수출입 업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피동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심한 경우 일방적인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

□ 비특혜 원산지 관련 외부 교육 또는 컨설팅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없음]이라고 답한 기업의 수가 83%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혜 및 비특혜 원산지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낮은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외부 교육이나 컨설팅 경험이 없다는 것은 관련 정보에 접근할 기회가 부족한 것을 의미하며, 정부나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표 3-6] 비특혜 원산지 관련 외부 교육 또는 컨설팅 경험 여부

답변	기업 수	비율 (%)
있음	63	10
없음	500	83
계획 중	42	7
총합계	605	100

3. 원산지조사 현황 및 기업 대응

□ 원산지와 관련하여 미국 CBP로부터 CBP Form 28 혹은 CBP Form 29를 요청받은 경험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19개 기업만이 요청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해 상대적으로 비율은 낮은 것으로 보이나, 해당 기업들이 최근 10년간 요청받은 건수를 파악한 결과, 10년 전 대비 2025년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음

- o 2023년까지는 연평균 15건 내외의 조사 요청을 받았으나, 2024년 24건, 2025년(6월까지) 42건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어 수입 물품에 대한 CBP의 검증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3-7] CBP Form 28/29 요청받은 경험 및 건수



- 원산지조사에 대한 애로사항으로 [증빙서류 및 소명자료 구비·관리]가 3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 부족] 24%, [전문 인력 부족] 23% 순으로 애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8] 원산지조사 대응 애로사항

답변	기업 수	비율 (%)
증빙서류 및 소명자료 구비·관리	216	36
정보 부족 및 낮은 접근성	147	24
전문 인력 부족	141	23
협력사 비협조	64	11
원산지 관리 시스템 도입 비용 부담	26	4
소명 자료 영문 번역	11	2
총합계	605	100

4. 관세 부과에 따른 기업 영향

- 미국 관세 부과 조치에 따른 주요 영향으로는 [가격 경쟁력 약화]가 26%로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수출가격 변동] 24%, [수출 지연 또는 수출 물량 감소]가 22%로 주된 애로사항으로 나타남

[표 3-9] 관세 부과에 따른 주요 영향(피해) -복수 답변-

답변	기업 수	비율
관세 부과에 따른 가격 경쟁력 약화	226	26%
수출가격 변동(ex. 납품 단가 인하 요구 등)	206	24%
수출 지연 또는 수출 물량 감소	186	22%
거래 중단 또는 중단 우려	84	10%
공급망 구조 재편에 따른 부담 증가	62	7%
법률 및 규제 대응 비용 부담	25	3%
기타	76	9%
총합계	865	100%

- 관세 부과 조치에 따른 수출액 감소 영향에 대해 39%의 기업이 구체적인 수치 제시를 어려워했지만, 답변한 기업 중 [5% 이상 ~ 10% 미만 감소]를 예상하는 기업이 16%로 가장 많았으며, [20% 이상 대폭 감소]를 우려하는 기업도 11%에 달함
- 응답 기업의 54%가 실질적인 수출 감소를 예상하고 있어, 관세 조치의 부정적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됨

[표 3-10] 관세 부과로 인한 예상 수출 감소액

답변	기업 수	비율 (%)
감소하지 않을 것	40	7
0% 이상~5% 미만	54	9
5% 이상~10% 미만	95	16
10% 이상~15% 미만	62	10
15% 이상~20% 미만	48	8
20% 이상	68	11
기타	238	39
총합계	605	100

제3절 시사점

1. 조사 내용 요약

-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경우 미국 수출 시 비특혜 원산지 기준에 대한 중요도 인식은 약 60%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 비특혜 원산지 기준에 대한 이해도는 낮은 것으로 보이며, 정보 습득을 위한 교육이나 컨설팅 참여 경험 또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원산지조사와 관련하여 미국이 요청하는 CBP Form 28 혹은 CBP Form 29를 받은 경험이 있는 기업의 수는 많지 않으나, 최근 2년 요청 건수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음
- 미국의 관세 부과 정책과 관련해서는 가격 경쟁력 약화, 수출가격 변동, 수출 지연 또는 수출 물량 감소가 주요 영향(피해)로 여겨짐

2. 시사점

- 수출 전략 측면에서 원산지 기준을 고려한 제품 설계 및 개발 프로세스가 구축되어야 하며, 특히, 중국산 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경우,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로의 원료 공급처 다변화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를 위한 원산지 판정 프로세스 구축이 요구되며, 협력업체와의 원산지 정보 공유를 통해 원료 및 부품의 원산지를 실시간으로 추적·관리해야 함
- 공공 분야에서는 기업 수출 전략 수립을 위해 비특혜 원산지 기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다양한 품목에 대한 원산지 판정 가이드라인 및 원산지조사 대응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기업의 효율적인 원산지 관리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부 록. 2분기 인포그래픽





기업 설문 개요

※ 배경 :

- 2025년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는 원산지를 기준으로 부과중이며, 이러한 원산지의 판단은 비특혜 원산지 기준에 따름
- 최근 미국은 세수 확보, 원산지 위반 및 허위 신고 방지를 위해 원산지조사를 강화
- 미국 비특혜 원산지 기준에 대한 수출기업 인식, 원산지조사 및 관세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총 605개 기업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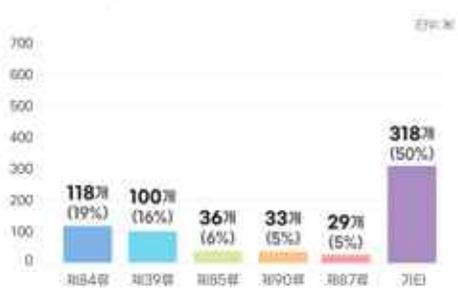
※ 기간 : 2025년 6월 9일 ~ 6월 27일 (약 3주)

※ 문항 : 비특혜 원산지, 원산지조사, 관세 조치에 따른 영향 관련 문항 등

※ 설문 대상 기업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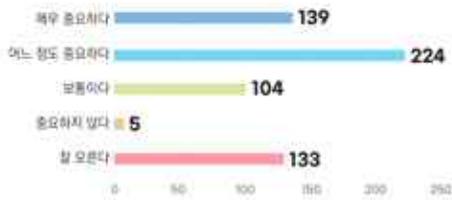


※ 설문 기업 주요 수출 품목 2단위 기준 - 복수 응답 가능 -



미국 비특혜 원산지에 대한 수출기업 인식

※ 미국 비특혜 원산지에 대한 중요성



답변	기업 수	비율
매우 중요하다	139	23%
어느 정도 중요하다	224	37%
보통이다	104	17%
중요하지 않다	5	1%
잘 모른다	133	22%
총 합계	60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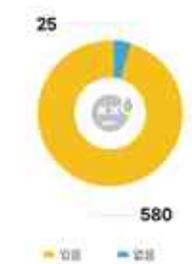
※ 특혜 및 비특혜 원산지 기준 차이에 대한 이해도



답변	기업 수	비율
완전히 이해한다	21	3%
어느 정도 이해한다	171	28%
정확히 모른다	315	52%
전혀 모른다	98	16%
총 합계	60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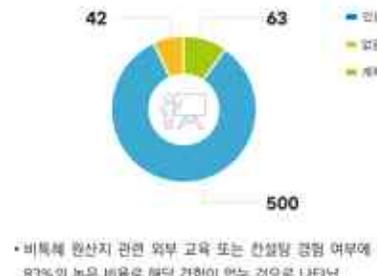
미국 비특혜 원산지에 대한 수출기업 인식

※ 원산지기준의 차이로 인한 애로 경험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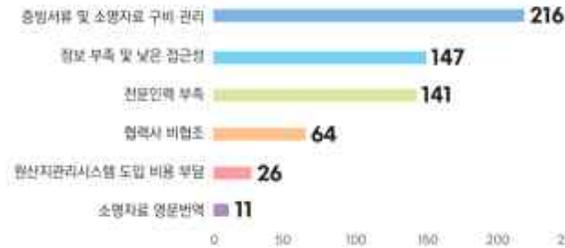
- [관련 애로사항]**
- 한-중 연결 공정 제품에 대한 특혜 원산지 기준은 세법변경기준으로 FTA에 따른 특혜 대우를 받았으나, 일반 원산지는 기준이 상이하여 판정에 애로를 겪음
 - 미국의 원산지 기준이 애매모호하여 중국산 부품을 수입하여 한국에서 가공하는 경우 원산지가 중국인지 한국인지 잘 파악할 수 없음
 - 특혜 비특혜 원산지 기준 차이에 대한 사전조류 부재로 인해, 수출입 현장에서 문제를 수동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일방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비특혜 원산지 관련 교육 및 컨설팅 경험



원산지 조사

* 원산지조사 대응 애로사항



항목	기업 수	비율
증빙서류 및 소명자료 구비 관리	216	36%
정보 부족 및 낮은 접근성	147	24%
전문인력 부족	141	23%
협력사 비협조	64	11%
원산지관리시스템 도입 비용 부담	26	4%
소명자료 영문번역	11	2%
총 합계	605	100%

* CBP Form 28 혹은 29를 요청받은 경험



* 정보제공 요청 사유

항목	기업 수
FTA 특혜원산지결정기준	6
비특혜원산지결정기준	0
직접운송 여부	1
물류분류 확인	4
관세가격	3
실제 제조공정 수경 여부	6
C/O 진위 여부	7

* 최근 10년간 요청 받은 건수

연도	건수
2016	13
2017	12
2018	16
2019	15
2020	17
2021	16
2022	14
2023	16
2024	24
2025	42

관세 영향

* 관세 조치에 따른 국내 기업 영향(복수응답)



항목	기업 수	비율
관세 부과에 따른 가격 경쟁력 약화	226	26%
수출가격 변동(ex. 납품 단가 인하 요구 등)	206	24%
수출 지연 또는 수출 물량 감소	186	22%
거래 중단 또는 중단 우려	84	10%
공급망 구조 재편에 따른 부담 증가	62	7%
법률 및 규제 대응 비용 부담	25	3%
기타	76	9%
총 합계	865	100%

* 관세 조치로 인한 예상 수출 감소액



항목	기업 수	비율
감소하지 않을 것	40	7%
0% 이상 - 5% 미만	54	9%
5% 이상 - 10% 미만	95	16%
10% 이상 - 15% 미만	62	10%
15% 이상 - 20% 미만	48	8%
20% 이상	68	11%
기타	238	39%
총 합계	605	100%

제4장

하반기 수출기업 설문조사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제1절 설문조사 개요

제2절 설문조사 결과

제3절 시사점

부 록 하반기 인포그래픽

제4장

하반기 수출기업 설문조사

제1절 설문조사 개요

-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약 1년간 지속·확대되고 있는 미 관세정책의 영향, 기업 애로사항, 지원 정책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미 관세 조치에 따른 수출기업 현황 조사」를 주제로 하반기 통합 설문조사를 실시함
- 설문조사 개요는 아래와 같음
 - 조사 목적: 미 관세 조치에 따른 수출기업 현황 조사
 - 조사 기간: 2025년 10월 17일 ~ 2025년 11월 7일(3주간)
 - 조사 대상 및 방법
 - (대상) 2025년 직·간접적으로 미국으로 물품을 수출하고 있는 기업의 수출 담당자
 -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비대면 설문
- 설문 설계
 - 문항 설계를 위해 주요 수출기업, 관세사 및 회계사 등의 전문가 자문을 반영하여 설문 문항 설계 및 검토 진행
 - 문항 간 중복 응답 가능성 및 설문 보기 오류 최소화를 위해 2차 자문을 통한 설문 문항 검토 실시

□ 설문 문항

기초 설문

1. 귀사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의 산업군은?

- | | | |
|------------------|--------------------------|------------|
| ① 농림수산물 및 가공식품 | ⑤ 철강·비철금속 및 알루미늄 제품 | ⑨ 섬유·의류·신발 |
| ② 화학·석유화학·고분자 제품 | ⑥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 ⑩ 기타 |
| ③ 기계 및 산업설비 | ⑦ 기타 운송수단 및 부품(조선, 항공 등) | |
| ④ 전기·전자 및 반도체 | ⑧ 의약·의료기기·바이오 | |

2. 귀사의 규모는?

- ① 대기업
- ② 중견기업
- ③ 중소기업

3. 수출 물품 생산을 위한 주요 원재료 및 중간재 수입 국가는?

- | | | |
|-------|---------|-------------|
| ① 중국 | ⑤ 유럽 | ⑨ 중동 및 아프리카 |
| ② 일본 | ⑥ 북미 | ⑩ 국내 조달 |
| ③ 아세안 | ⑦ 중남미 | ⑪ 기타 |
| ④ 인도 | ⑧ 오세아니아 | |

4. 현재 귀사의 미국 수출 형태는?

- ① 미국 법인·지사를 통해 직접 수출
- ② 미국 수입자에게 직접 수출 (OEM, ODM 포함)
- ③ 전자상거래 플랫폼(ex. 아마존, 이베이 등)을 통해 직접 수출
- ④ 간접수출(ex. 중간상, 무역상 등을 통한 수출)
- ⑤ 기타 ()

5. 2025년 미국 관세조치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귀사의 대미 수출 물량에 변화가 있습니까?

- ① 증가
- ② 변화 없음
- ③ 10% 미만 감소
- ④ 10% 이상 20% 미만 감소
- ⑤ 20% 이상 감소

관세정책 이해 및 애로

1. 귀사의 대미 수출 품목에 적용되는 미국의 관세 조치(상호관세, 품목별 추가관세 등)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 최근 관세 관련 미국의 무역정책 중 가장 우려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1-3순위 응답)

- ① 제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제품, 자동차, 자동차 부품, 구리 등)
- ② IEEPA 상호관세
- ③ 반덤핑 및 상계관세
- ④ 제301조에 따른 대중국 관세
- ⑤ 소액 면세 제도 폐지에 따른 추가 관세
- ⑥ 기타 ()

3.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주요 애로는 무엇입니까? (1-3순위 응답)

- ① 수출 물량 감소
- ② HS Code 분류 상이로 인한 애로
- ③ 원산지 관리 행정부담 증가
- ④ 통관 절차 지연 및 물류비 상승
- ⑤ 관세 부담 전가로 인한 애로
- ⑥ 관세율 산정 애로
- ⑦ 기타 ()

관세정책 대응

1. 귀사는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대체로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별로 그렇지 않다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 귀사의 FTA 활용 경험이 미국의 관세정책 대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대체로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별로 그렇지 않다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⑥ FTA 활용 경험이 없다

3.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해 귀사가 실행 중이거나 실행하고자 하는 전략 또는 대응 방안은 무엇입니까? (1~3순위 응답)

- ① 수출가격 인하
- ② 수출자 및 수입자 등 관세 부담 분담
- ③ 원산지 관리 강화
- ④ 해외직접투자
- ⑤ 수출시장 다변화
- ⑥ 품목분류 변경
- ⑦ 기타()

4. 수출가격 인하를 위해 선호되는 구체적 방안은 무엇입니까? (1~3순위 응답)

- ① 재료비 절감(ex. 원재료, 부품 단가 등)
- ② 물류비 절감
- ③ 기업 이윤 재조정
- ④ FOB 가격으로 신고 등 미국 수입 통관 시 적용되는 과세가격 조정
- ⑤ 기타()

5. 추가적인 관세로 인한 비용은 어떤 주체가 부담합니까?

- ① 전액 수출자 부담
- ② 전액 수입자 부담
- ③ 판매가격 인상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
- ④ 각 주체가 일정 비율 분담
- ⑤ 기타()

6. 원산지 관리를 위해 선호되는 구체적 방안은 무엇입니까? (1~3순위 응답)

- ① 원산지 사전 판정
- ② 제조공정 고도화 혹은 다각화
- ③ 원재료 및 중간재 수입국 변경
- ④ 미국산 가치(20%) 증빙 체계 구축
- ⑤ 기타()

7. 해외직접투자처로 선호되는 국가는 어디입니까? (1~3순위 응답)

- ① 미국
- ② 멕시코
- ③ 캐나다
- ④ 남미
- ⑤ 아세안
- ⑥ 기타()

8. 수출시장을 다변화할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시장은 어디입니까? (1~3순위 응답)

- ① EU 시장
- ② 아세안 시장
- ③ 중남미 시장
- ④ 중동/아프리카 신흥시장
- ⑤ 기타()

美 관세정책 대응 지원의 효과**1. 귀사는 美 관세정책 대응에 관해 정책적 지원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1-1. (1.에 있다에 응답한 경우) 다음 중 어떤 지원을 받았습니까? (복수 응답)

- ① 금융 및 세제 지원
- ② 수출 보험 및 물류비 지원
- ③ 신시장 개척 및 해외 진출 지원
- ④ 품목분류 및 원산지 판정 지원
- ⑤ 컨설팅 및 교육을 통한 정보 제공
- ⑥ 기타 ()

2. 귀사는 현재 정부의 美 관세정책 대응 지원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대체로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별로 그렇지 않다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⑥ 어떤 지원책이 있는지 모른다

3. 현재 美 관세정책 대응 지원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ex. 필요한 지원, 기타 애로사항 등

관세정책 예상

1. 현재 관세 중심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1년 이내
- ② 2년~3년 이내
- ③ 4년~5년 이내
- ④ 향후 10년 지속 유지

기타 제도 이해

1. 귀사는 다음의 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FTZ(Foreign Trade Zone) 제도: 한국의 보세공장제도와 유사한 제도로서, 미국 관세법상 외국 지역으로 간주되는 특별구역을 지정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
- First Sale 제도: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을 산정할 때, 제조업자 -> 중개상 -> 미국 수입업체로 이루어지는 3자 거래에서 수입업체가 중개상에게 지불한 최종 가격이 아닌 제조업체와 중개상 간 최초 거래가격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관세 상쇄금 제도: 제232조에 따라 부과된 자동차 부품 수입 관세에 대해 미국 내 조립 또는 제조를 촉진하기 위해 일부 수입자를 대상으로 관세 부담을 일부 상쇄해주는 제도
- CBP Ruling 제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CBP가 미국으로 수출·입 될 물품에 대해 과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세가격, 원산지, 품목분류 등에 대한 사전 유권해석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결정문 발행 시 해당 건에 대해 미국 세관당국과 수입자 모두에게 구속력 발생

제도	전혀 모른다	----->			완전히 알고있다
		②	③	④	
1. FTZ 제도	①	②	③	④	⑤
2. First Sale 제도	①	②	③	④	⑤
3. 관세 상쇄금 제도	①	②	③	④	⑤
4. CBP Ruling 제도	①	②	③	④	⑤

기타 사항

1. 귀사는 향후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하기를 희망하는 국가(지역)가 있으십니까?
해당 국가(지역)을 선택하거나, 국가명을 자유롭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① 멕시코
- ② 브라질
- ③ 러시아
- ④ 아프리카
- ⑤ 이 밖의 국가

2. 미국 관세정책과 관련된 정보 수집은 주로 어느 경로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 ① 미국 바이어
- ② 정부 및 공공기관 (관세청, 코트라, 한국원산지정보원 등)
- ③ 전문가 (관세사, 변호사, 회계사 등)
- ④ 기타

제2절 설문조사 결과

1. 기초 설문

- **(기업 규모)** 하반기 설문조사 응답 기업은 총 331개社이며, 이 중 대기업이 76개(23%), 중견기업이 126개(38%), 중소기업이 129개(39%)로 나타나 대체로 고른 분포를 보임

[표 4-1] 기업 규모

규모	기업 수	비율 (%)
대기업	76	23
중견기업	126	38
중소기업	129	39
합계	331	100

- **(주요 수출 품목)** 수출 품목 주요 산업군 분포는 대체로 유사하나, 전기전자 및 반도체 16%,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13%, 기계 및 산업설비 12%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4-2] 산업군

산업군	기업 수
전기·전자 및 반도체	53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43
기계 및 산업설비	40
기타	39
화학·석유화학·고분자 제품	33
철강·비철금속 및 알루미늄 제품	32
섬유·의류·신발·잡화	29
농림수산물 및 가공식품	28
의약·의료기기·바이오	26
기타 운송수단 및 부품(조선, 항공 등)	8
합계	331

- **(주요 원재료 및 중간재 수입국)** 응답 기업의 주요 원재료 및 중간재 공급처는 국내 조달(34.7%)을 제외하고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32.3%로 가장 높게 나타나 원재료·중간재의 중국산 의존도가 높음

- o 중국산 원재료 및 중간재를 주로 사용하는 산업은 전기·전자 및 반도체(20개社), 기계 및 산업설비(15개社),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13개社) 순으로 높게 나타나, 타 산업 대비 미국의 대중국 제재조치에 취약한 공급망 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임

[표 4-3] 원재료 및 중간재 수입국

답변	기업 수	비율 (%)
국내 조달	115	34.7
중국	107	32.3
유럽	21	6.4
북미	21	6.4
아세안	20	6
일본	18	5.5
기타	11	3.3
중남미	9	2.7
오세아니아	4	1.2
중동 및 아프리카	3	0.9
인도	2	0.6
합계	331	100

- (수출 형태) 미 수입자에게 직접 수출(OEM, ODM 포함)하는 형태가 43.5%로 가장 높으며, 법인·지사를 통한 직접 수출 26%, 간접 수출 20.5%로 높게 나타남

[표 4-4] 수출 형태

수출 형태	기업 수	비율 (%)
미국 수입자에게 직접 수출(OEM, ODM 포함)	144	43.5
미국 법인·지사를 통해 직접 수출	86	26
간접 수출	68	20.5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직접 수출	25	7.6
기타	8	2.4
합계	331	100

- **(수출 물량 변화)** 전년 동기 대비 2025년 수출 물량 변화를 살펴보면, 변화 없음 30.2%, 감소 59.5%, 증가 10.3%로 미 관세 조치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수출 물량이 감소한 산업군은 주로 기계 및 산업설비(33개社), 전기·전자 및 반도체(30개社),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26개社), 철강·비철금속 및 알루미늄 제품(25개社)으로 제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 영향권에 있는 기업들로 파악됨

[표 4-5] 전년 동기 대비 수출 물량 변화

답변	기업 수	비율 (%)
변화 없음	100	30.2
10% 미만 감소	82	24.8
20% 이상 감소	61	18.4
10% 이상 20% 미만 감소	54	16.3
증가	34	10.3
합계	331	100

2. 관세정책 이해 및 애로

- **(미 관세정책 이해)** 각 기업 담당자가 미국에 수출하는 자사 품목에 적용되는 관세 조치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한 경우는 58.6%로 비교적 높음

[표 4-6] 미 관세정책에 대한 이해

답변	기업 수	비율 (%)
매우 그렇다	69	20.8
대체로 그렇다	125	37.8
보통이다	110	33.2
별로 그렇지 않다	25	7.6
전혀 그렇지 않다	2	0.6
합계	331	100

- **(우려되는 관세정책)** 하반기 현재 미국의 무역정책 중 가장 우려되는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제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를 1순위로 선택한 기업이 147개로 가장 높음

- o IEEPA 기반 관세에 대한 美 대법원 판결의 불확실성 및 트럼프 1기부터 지속되어 온 중국산 물품의 글로벌 공급망 배제 정책으로 상호관세, 제301조 등의 관세정책에 대한 1순위 우려 응답은 높지 않으나,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확대·고도화되고 있는 제232조 품목별 관세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표 4-7] 우려되는 미 관세정책 순위

답변	1순위	2순위	3순위
제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	147	36	24
IEEPA 상호관세	55	99	62
제301조에 따른 대중국 관세	50	77	74
반덤핑 및 상계관세	49	79	100
소액 면세 제도 폐지	28	39	66
기타	2	1	5

- (주요 애로사항) 미 관세정책에 따른 주요 애로사항 중 [수출 물량 감소]를 1순위로 선택한 기업이 129개로 가장 높았으며, [관세 부담 전가로 인한 애로], [통관 절차 지연 및 물류비 상승] 순으로 애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o 특히, 화장품, 의류, 식품 등 저가·박리다매를 통한 이윤 구조를 가진 산업 혹은 미국 수입자의 바이링 파워가 강한 경우 등에서 수출 물량 및 관세 부담 전가로 인해 영업이익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8] 미 수출기업 주요 애로사항

답변	1순위	2순위	3순위
수출 물량 감소	129	39	55
관세 부담 전가로 인한 애로	87	92	68
통관 절차 지연 및 물류비 상승	49	96	69
원산지 관리 행정부담 증가	29	46	52
HS Code 분류 상이로 인한 애로	26	26	20
관세율 산정 애로	10	30	61
기타	1	2	6

3. 관세정책 대응

□ (대응 현황) 미 관세정책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한 경우는 184개社(56.6%)로 높게 나타남

○ 다만, [그렇다]라고 답변한 184개社의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 수출 물량이 감소했다고 답변한 기업이 104개社인 것으로 나타나 관세조치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

- A社 사례: 철강 파생제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으로 미국의 제232조 관세 조치로 인해 관세율이 50%로 상승한 후, 미국向 수출이 60~70% 이상 급감하였으며, 미국 내 경쟁사와의 단가 차이로 인해 장기적 관점에서 경쟁력 지속 약화 중임

[표 4-9] 미 관세정책에 대한 적극적 대응 여부

답변	기업 수	비율 (%)
매우 그렇다	55	16.6
대체로 그렇다	129	40
보통이다	102	30.8
별로 그렇지 않다	39	11.8
전혀 그렇지 않다	6	1.8
합계	331	100

□ (FTA 활용 경험) FTA 활용 경험이 미 관세정책 대응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한 경우가 148개社(44.7%)로 나타났으며, 이와 별개로 11개 기업은 FTA 활용 경험이 없는 것으로 응답함

○ 기존 FTA 활용 시 구축한 원산지 증빙 체계, 관세사 협업, 계약 조건 설계 등의 경험을 통해 강화되고 있는 원산지 관련 이슈에 대응하고 있다는 기업 응답 다수

[표 4-10] FTA 활용 경험이 관세정책 대응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답변	기업 수	비율 (%)
매우 그렇다	41	12.4
대체로 그렇다	107	32.3
보통이다	108	32.6
별로 그렇지 않다	52	15.7
전혀 그렇지 않다	12	3.6
FTA 활용 경험 없음	11	3.3
합계	331	100

- (대응 전략) 미 관세정책에 따른 기업의 대응 전략에 대해 1순위 기준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답변은 [수출 시장 다변화](94개社)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관세 부담 분담](82개社), [원산지 관리 강화](56개社) 등으로 나타남
- 관세 중심의 미국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미국 시장 외 대체 시장을 발굴하거나 관세 부담을 그대로 흡수하는 등의 소극적 대응이 높은 것으로 보임
 - 다만, 미국의 무역정책이 특정 국가산 물품에 대한 고율 관세 및 공급망 재편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기업 인식 하에서, 원산지 관리 강화에 대한 전략 선호도가 3위를 기록하여 기업이 원산지 리스크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내부 체계 마련을 고려하고 있다는 신호로 보여짐

[표 4-11] 미 수출기업의 관세정책 대응 전략

답변	1순위	2순위	3순위
수출 시장 다변화	94	81	63
관세 부담 분담	82	89	67
원산지 관리 강화	56	53	63
수출가격 인하	56	45	64
해외직접투자	35	37	27
품목분류 변경	6	25	42
기타	2	1	5

- (대응 전략 ①-수출 시장 다변화) 수출 시장 다변화 시 선호되는 지역을 묻는 질문에 1순위 응답 기준으로 아세안과 EU가 각각 134건, 133건으로 높은 응답을 보임

[표 4-12] 수출 시장 다변화 선호 지역

답변	1순위	2순위	3순위
아세안 시장	134	114	43
EU 시장	133	86	50
중남미 시장	37	68	121
중동/아프리카 신흥시장	25	57	109
기타	2	6	8

- (대응 전략 ②-관세 부담 분담) 관세 부담 분담을 위해 선호되는 방안은 수출자, 수입자, 생산자 등의 [각 주체가 일정 비율을 분담]하는 방안이 40.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액 수입자가 부담]하는 경우는 16.6%로 낮게 나타나 미 역외 수출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를 보임
- 식품·의류 등 소비재의 경우, 최종 판매가격 인상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많으나, 소비자 가격 상승에 따른 수요 감소 현상으로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존재

[표 4-13] 선호되는 관세 부담 분담 방식

답변	기업 수	비율 (%)
각 주체가 일정 비율 분담	133	40.1
판매가격 인상으로 최종 소비자 전가	71	21.5
전액 수출자 부담	69	20.8
전액 수입자 부담	55	16.6
기타	3	1
합계	331	100

- (대응 전략 ③-원산지 관리 강화) 원산지 관리 강화를 위해 선호되는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1순위 기준 [원재료 및 중간재 수입국 변경]이 113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원산지 사전판정 이용](98건), [제조공정 고도화 혹은 다각화](77건)가 높게 나타남
- 미국의 관세 조치가 국가를 기준으로 상이한 관세가 적용되고 있고 특정 국가(중국, 러시아 등)를 대상으로 규제 강도가 높은 만큼, 주요 원재료 및 중간재 공급망을 변경하려는 시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임
 - B社 사례: 미국으로 뷰티 제품 수출 시, 판촉물로 중국산을 구매하여 함께 수출하였으나, 중국산에 대한 고율 관세로 인해 판촉물 배포 중단
 - C社 사례: 신장 위구르 지역 이슈로 인해 노동 규제가 강화되면서 중국산 면화 사용을 중단하였으며, 미국산 가치 증빙(20%) 체계 활용을 위해 미국산 원면 혹은 원사 사용 비중 증가
 - D社 사례: 중국산 강제 사용 시 관세 조치뿐만 아니라 노동, 인권 이슈 및 정치적 리스크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미국向 물품에는 중국산 강제 사용 배제

[표 4-14] 선호되는 원산지 관리 강화 방안

답변	1순위	2순위	3순위
원재료 및 중간재 수입국 변경	113	92	80
원산지 사전판정	98	73	87
제조공정 고도화 혹은 다각화	77	122	88
미국산 가치(20%) 증빙 체계 구축	38	44	73
기타	5	0	3

- (대응 전략 ④-수출가격 인하) 수출가격 인하를 위해 선호되는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1순위 기준 [재료비 절감]이 135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기업 이윤 재조정](86건), [물류비 절감](67건)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4-15] 선호되는 수출가격 인하 방안

답변	1순위	2순위	3순위
재료비 절감	135	92	66
기업 이윤 재조정	86	70	124
물류비 절감	67	136	81
FOB 가격으로 신고 등 미국 수입 통관시 적용되는 과세가격 조정	43	33	54
기타	0	0	6

- (대응 전략 ⑤-해외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처로 선호되는 지역이 어디인지에 대한 질문에 1순위 응답 기준 미국이 158건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아세안 92건, 멕시코 44건으로 높게 나타남

- 다만, 미국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고임금, 인력 확보, 공장 운영, 규제 준수 비용 등 총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투자에 따른 기대효과와 비용 간 경제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큰 것으로 답변

[표 4-16] 선호되는 해외직접투자처

답변	1순위	2순위	3순위
미국	158	48	49
아세안	92	89	72
멕시코	44	58	51
캐나다	14	79	65
남미	13	44	71
기타	10	13	23

4. 정책 지원 효과 및 예상

- (수출 물량 변화) 미 관세 조치 관련 정책 지원을 받아본 적이 있는 기업은 전체 331개社 중 53개社(16%)로 낮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278개社(84%)는 관련 지원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답함
 - 직접적 수혜 경험이 없는 기업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정부 지원 사업의 인식 개선 필요

[표 4-17] 정책적 지원 수혜 여부

정책적 지원 수혜 여부	기업 수	비율 (%)
있다	53	16
없다	278	84
합계	331	100

- (지원 형태) 정책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53개 기업 중 지원의 형태를 묻는 질문에 [수출 보험 및 물류비 지원]이 32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품목분류 및 원산지판정 지원](22건), [신시장 개척 및 해외 진출 지원](16건)이 높게 나타남
 -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영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직접적으로 상쇄시켜 줄 수 있는 비용 완화, 금융·세제 측면의 지원이 효과적이라고 답변함
 - 품목분류 및 원산지판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한국의 HS Code 및 원산지판정 체계가 상이하므로, 공공영역에서 기업의 원산지 및 품목분류 리스크를 사전에 진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답함

[표 4-18] 수혜 받은 정책 지원 형태

지원 형태	응답 수 -복수 응답-
수출 보험 및 물류비 지원	32
품목분류 및 원산지판정 지원	22
신시장 개척 및 해외 진출 지원	16
컨설팅 및 교육을 통한 정보 제공	16
금융 및 세제 지원	13
기타	1
합계	100

- (지원 효율성) 현재 정부의 미 관세정책 지원이 효과적인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한 비율은 24.2%에 불과하며,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 기업은 31.5%, [어떤 지원책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답변이 6.9%로 나타나 지원의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보임

[표 4-19] 정부 지원의 효율성

답변	기업 수	비율 (%)
매우 그렇다	14	4.2
대체로 그렇다	66	20
보통이다	124	37.5
별로 그렇지 않다	74	22.4
전혀 그렇지 않다	30	9.1
어떤 지원책이 있는지 모른다	23	6.9
합계	331	100

5. 제도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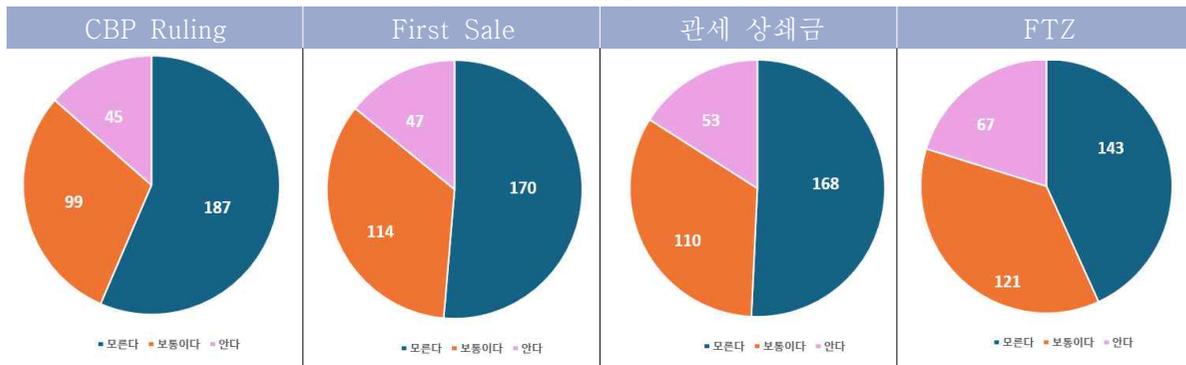
- 미 관세정책 관련 활용 가능한 제도들에 대한 기업 인식을 조사하고자 다음 제도들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 조사 실시

[표 4-20] 미 관세정책 관련 제도

관련 제도	설명
CBP Ruling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CBP가 미국으로 수출·입 될 물품에 대해 과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세가격, 원산지, 품목분류 등에 대한 사전 유권해석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결정문 발행 시 해당 건에 대해 미국 세관당국과 수입자 모두에게 구속력 발생
First Sale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을 산정할 때, 제조업자 -> 중개상 -> 미국 수입업체로 이루어지는 3자 거래에서 수입업체가 중개상에게 지불한 최종 가격이 아닌 제조업체와 중개상 간 최초 거래가격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
관세 상쇄금	제232조에 따라 부과된 자동차 부품 수입 관세에 대해 미국 내 조립 또는 제조를 촉진하기 위해 일부 수입자를 대상으로 관세 부담을 일부 상쇄해주는 제도
FTZ(Foreign Trade Zone)	한국의 보세공장제도와 유사한 제도로서, 미국 관세법상 외국 지역으로 간주되는 특별구역을 지정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

- (CBP Ruling) CBP Ruling 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라는 답변은 45건(13.6%)인 것에 반해 ‘모른다’는 답변이 187건(56.6%)으로 높게 나타남
- (First Sale) First Sale 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라는 답변은 47건(14.2%)인 것에 반해 ‘모른다’는 답변이 170건(51.4%)으로 높게 나타남
- (관세 상쇄금) 관세 상쇄금 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라는 답변은 53건(16%)인 것에 반해 ‘모른다’는 답변이 168건(50.8%)으로 높게 나타남
- (FTZ) FTZ 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라는 답변은 67건(20.2%)인 것에 반해 ‘모른다’는 답변이 143건(43.2%)으로 높게 나타남

[표 4-21] 관련 제도 인식



6. 기타 사항

- (FTA 체결 희망 국가) 향후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하길 희망하는 국가 혹은 지역 1위는 멕시코(35.5%)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브라질(28.4%), 러시아(26.1%)로 나타남
- 아프리카 지역 희망 국가로는 남아공, 케냐, 나이지리아 이집트 등의 국가가 언급되었으며, 기타로는 일본, 대만, 중동 지역 국가 등이 언급됨

[표 4-22] FTA 체결 희망 지역 및 국가

지역 혹은 국가	기업 수	비율 (%)
멕시코	175	35.5
브라질	140	28.4
러시아	129	26.1
아프리카	18	3.7
기타	31	6.3
합계	493	100

- (정보 수집 채널) 미국 관세정책 관련 정보를 주로 접하게 되는 채널에 대한 질문에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47.4%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임
 - 정부 및 공공기관을 제외한 민간 정보원의 경우, 전문가 자문 비용 부담, 수입자와의 거래 관계에 대한 잠재적 영향, 정보의 신뢰도 저하 우려 등으로 활용상 제약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정보의 객관성과 공신력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 제공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임

[표 4-23] 정보 수집 채널

답변	기업 수	비율 (%)
미국 바이어	58	17.5
정부 및 공공기관	157	47.4
전문가	87	26.3
기타	29	8.8
합계	331	100

7. 기타 기업 의견

- 정부 차원의 관세 인하·재협상 및 외교적 대응 강화
 - 실제 필요한 지원보다 유사한 형태의 지원만 반복되고 있어,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효과가 부족함
 -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세 협상을 통해 미국과의 근본적인 관세율 인하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과의 정치적 현안을 무역·관세 문제로 전가하지 않도록 친기업적 외교·통상 전략이 요구됨
- 재정·세제·물류비 등 비용 부담 완화 지원
 - (재정·세제) 관세로 인한 추가 비용의 일부를 현금 지원·보조금 등으로 보전하고, 법인세 인하, 관련 세액 감면 등을 통해 기업 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의견 다수 제기
 - (금융) 관세 관련 안정 자금, 금융 지원 등 별도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 확대 요청

- (물류) 물류비 인하 및 통관 관련 행정비용 지원 등 물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다수 제기
- 제도·규정 불확실성(원산지, 통관 등) 해소 요구
 - 비특혜 원산지판정, 신장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 등 미국 통상 규제에 대한 해석 및 기업 대응 지원 필요
 - 수출 물품에 사용된 원자재 비율, 원자재 혹은 중간재의 원산지 등이 미국 원산지판정에 미치는 영향 및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필요
 - 원산지관리 인력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 및 실무진에 대한 원산지 교육 확대
-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 플랫폼 및 홍보 강화
 - (속도·정확성) 관세정책 현황에 대한 데일리 업데이트 자료가 필요하며, 빠르게 진행되는 협상 내용에 대한 진행 경과 및 내용 공유 필요
 - (플랫폼) 복잡한 미 관세율 및 정책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 필요
 - 유니패스 등의 사이트 문의 시 무응답한 사례가 있으며, 기업 핫라인, 상담센터 등의 체계적 운영과 AI 챗봇 상담 시스템 구축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음
 - (홍보 강화) 정부의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어떤 지원이 있는지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기업의 정보 획득이 용이하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됨
- 중소기업 업종·규모별 맞춤 지원 요구
 - 중소기업 단계에서 대응할 수 있는 인력 및 비용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별·산단별 담당자 배치 및 중소기업 전용 활용 창구 마련 필요
 - 현재 대부분의 지원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원 대상이 제조업에 치중되어 있어 지원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제3절 시사점

□ 수출 물량 감소 및 원재료 조달 구조 등 리스크 현실화

- **(수출 물량 감소)** 설문 응답 기업 중 약 59.5%가 전년 동기 대비 수출 물량이 감소했다고 응답함에 따라 미국 관세정책 변화가 수출 환경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함
 - 미 관세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답변한 184개사의 경우에도 수출 물량이 감소했다고 대답한 기업이 104개사인 것으로 나타나 관세 조치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임
- **(공급망 리스크)** 원재료·중간재 조달에서 국내 조달을 제외한 경우, 중국 비중이 32.3%로 높게 나타남에 따라 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대중국 견제 관세 조치에 따른 리스크에 취약한 상태임
 - 중국산 원재료 및 중간재를 주로 사용하는 산업은 전기·전자 및 반도체(20개사), 기계 및 산업설비(15개사),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13개사)으로 타 산업 대비 미국의 대중국 제재 조치에 취약한 공급망 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원산지 관리에 대한 기업 인식 개선 중

- **(기업의 원산지 관리 인식 제고)** 미 관세조치에 따른 대응 전략으로 원산지 관리 강화가 3위 응답을 기록하여, 원산지 리스크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됨
 - 미국 외 대체 수출시장 발굴, 관세 부담 분담 등의 대응 전략이 1, 2순위 답변을 기록하였으나, 이는 미국의 강화된 규제를 회피하거나 부담을 그대로 흡수하는 등의 소극적 대응에 해당하므로, 기업의 역량 강화 측면에서 원산지 관리를 위한 내부 체계 마련이 선호된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원산지 관리를 위해 선호되는 1순위 방안은 원재료 및 중간재 수입국 변경(113건)이며, 미국의 관세조치가 특정 국가(중국, 러시아 등)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공급망에서 해당 국가산 리스크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임
- **(FTA 활용에 따른 원산지 관리 역량 강화)** 44.7%에 해당하는 기업이 FTA 활용 경험이 미 관세정책 대응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함
 - 관련 기업 심층 인터뷰 결과, 과거 FTA 활용 시 구축한 원산지 증빙 체계,

관세사 협업, 계약 조건 설계 등의 경험을 통해 강화되고 있는 원산지 관련 이슈에 대응하고 있다는 기업 응답 다수

□ 지원정책 및 교육체계의 실효성 강화 필요

○ (정책 지원 실효성) 현재 미 관세조치에 대한 정책적 지원 경험이 있는 기업은 전체 응답의 16%에 불과하며, 정책 지원의 실효성에 대해 ‘효과적이다’라고 답한 기업은 단지 24.2%에 불과함

–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산업별·기업 규모별 관세조치 영향 및 애로를 반영한 정책 지원이 수립될 필요가 있음

○ (제도 이해) CBP Ruling, First Sale 등 미 관세조치에 따른 관세 부담 절감을 위해 적용될 수 있는 관련 제도 이해에 대해 ‘모른다’라고 답변한 경우가 약 5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 합법적인 제도적 틀 안에서 활용 가능한 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기업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틀이 마련되어야 함

□ 제232조 품목별 관세에 따른 기업 우려 증가

○ 미국의 무역정책 중 가장 우려되는 정책으로 제232조에 품목별 관세가 1순위 기록

– IEEPA 기반 관세에 대한 美 대법원 판결의 불확실성 및 트럼프 1기부터 지속되어 온 중국산 물품의 글로벌 공급망 배제 정책으로 상호관세, 제301조 등의 관세정책에 대한 1순위 우려 응답은 높지 않으나,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확대·고도화되고 있는 제232조 품목별 관세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 특히, 전년 동기 대비 수출 물량이 감소했다고 답변한 기업 중 대다수가 기계 및 산업설비(33개社), 전기·전자 및 반도체(30개社),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26개社), 철강·비철금속 및 알루미늄 제품(25개社) 산업군에 해당하여 동 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상 기업군인 것으로 고려됨

□ 수출시장 및 생산기지 다변화를 위한 정보 제공 필요

○ (수출시장 다변화) 미 관세정책에 대한 대응 전략 중 수출시장 다변화가 1순위 응답을 기록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아세안과 EU 시장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임

- 다변화 대상 시장에 대한 관세·비관세 장벽, 통관·인증 절차, 현지 수요 구조, 유통 채널, 규제 동향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필요
- 특히,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독자적으로 이러한 정보들을 수집·분석하는 데 한계가 존재하므로, 관련 시장 정보, 유망 품목 등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 정보 제공 필요
- o (생산기지 다변화)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응답 기업의 대응 전략 중 상대적으로 우선순위는 낮으나, 일부 기업은 관세 회피 및 완화, 원산지 요건 충족, 공급망 재편 등을 목적으로 생산기지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임
 - 다만, 미국, 멕시코, 캐나다 등 투자 국가의 기업 환경 및 규제 현황, 정치적 리스크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투자 계획 수립에 애로가 발생하는 상황임
 - 이를 위해, 원산지 요건 충족 여부, 부과 관세율 계산, 투자 환경 정보 제공, 관련 법·제도 정보 등을 일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 제공처가 필요함

부 록. 하반기 인포그래픽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

미국 관세정책 강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 전략은?

1위 수출시장 다변화, 2위 관세 부담 분담, 3위 원산지 관리 강화

단위: %



수출시장 다변화 선호 지역은?

1순위 대륙 시장은 아세안과 EU 시장 중심, 후순위는 중남미와 중동/아프리카 시장 선호

단위: %



미국의 관세 부담 분담 선호 방법은?

거래 주체별 협의하여 일정 비율 분담을 가장 선호, 소비자 성품은 판매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재 전가 방법을 선택

단위: %



원산지 관리 강화를 위한 구체적 전략은?

원재료 공급망 변경 또는 제조공장 다각화를 통한 한국산 편성 전의를 가장 선호, 원산지 사전인정을 통한 원산지 리스크 예방 전략도 선호

단위: %



미국 측 제도의 인식 수준은?

기업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미국 측 제도에 대한 이해 능력은 상대적으로 활용가능한 제도 정보 제공 필요



- 미국 관세청(CBP)에 원산지, 과세가격, 품목분류 등에 대해 사전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 CBP Ruling 제도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기업이 30%
-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산정 시 과세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First Sale 제도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기업 34%
-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자동차 부품의 수입관세에 대해 일부 수입자 대상으로 관세부담을 상쇄시켜 주는 관세 상해금 제도에 대해 모른다 응답이 33%
- 미국 관세법상 외국 자택으로 간주되는 특별구역인 FTZ(Foreign Trade Zone)를 지정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에 대해 모른다 응답이 37%

정책 지원 경험

미국 관세조치와 관련한 정책 지원 경험은?

직접적 지원 수혜 경험에 없는 기업 84%로 높음, 정부 지원 사람이 인식 개선 필요

단위: %



선호 정책의 형태는?

기업들이 선호하는 정책은 수출보험 및 물품비 지원이 1순위, 미국의 비특혜 원산지 인정 및 품목분류 판정 지원이 2순위에 해당

단위: %

